

9. 기 타

9-1. 임원현황

(2012년 3월 31일 현재)

| 구 분 | 성 명 | 직 명 | 담당 업무 | 주요 경력 |
|-----|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상근 | 오준석 | 지점대표 | 지점업무총괄 | 02.08-03.08 리파인/한국감정원,고문 |
| 상근 | 정학태 | 준법감시인 | 준법감시업무 | 01.11-04.11 서울보증보험, 감사 |

9-2. 이용자편람

| 용 어 | 주 요 내 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지급여력비율 | <p>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를 안정적으로 확보키 위해 보험종목별 위험도에 따라 보험계약준비금에 더해 보유하여야 할 자산기준에 대한 순자산 비율을 말하고, 이는 보험회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급여력비율 = (지급여력금액 / 지급여력기준금액) × 100 지급여력금액 : 납입자본금, 자본잉여금, 이익잉여금, 비상위험준비금 등의 합계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, 무형자산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, 이는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가치를 의미합니다. (보험업감독규정 7-1조) 지급여력기준금액 : 보험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것으로 보험위험액, 금리위험액, 신용위험액, 시장위험액 및 운영위험액을 각각 구한 후 분산효과를 고려해서 합산한 요구자본입니다. (보험업감독규정 7-2조) |
| ROA (Return on Assets) | 보험회사의 총자산을 사용하여 이익을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보험회사의 이익창출능력으로 자산대비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. |
| ROE (Return on Equity) | 보험회사에 투자된 자본을 사용하여 이익을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보험회사의 이익창출능력으로 자기자본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. |
| 유동성비율 | 유동성비율은 손보사의 지급능력을 표시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고객의 인출요구에 대한 지급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|
| 위험가중자산 | 위험가중자산이란 보유자산의 신용도(예시: 채권발행기관의 신용도, 차주의 신용도 등) 및 자산의 성격별로 예상 손실액을 추정한 것을 말하며, 총자산 중 미상각신계약비 및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산별 위험가중치를 부과하여 산출합니다. 통상적으로 위험가중치는 과거 경험율을 기초로 결정됩니다. |
| 유가증권평가손익 | <p>유가증권평가손익은 회계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장부가와 당해 회계연도말의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과의 차이를 의미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부가는 총회 결산승인후의 수정장부가를 의미합니다. |
| 특별계정 | 특별계정은 보험업법 제108조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계정과 동일한 개념으로, 일반계정과 구분 운용 및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정을 말합니다. 손해보험회사는 현재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에 대하여 특별계정을 설정하고 있습 |

| | 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|
| 특수관계인 | 특수관계인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의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,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의 직계존비속 등 친족 및 그들과 합산하여 30%이상을 출자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·기타 단체와 그 임원 등을 말합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신용평가등급 | <p>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정한 등급을 의미하며, 평가등급으로는 채무의 상환능력을 평가한 장·단기신용등급 등이 있습니다. 장기신용등급은 장기채무상환능력 및 상환불능위험, 투자자에 법적인 보호정도 등을 나타내는 것이며, 단기신용등급은 1년 미만 단기채무상환능력 및 상환불능위험 등을 나타냅니다. 각 신용평가기관별로 신용등급 체계는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.</p> <p>예시) 외국의 주요 신용평가 전문기관 등급표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구 분</th> <th>Moody's</th> <th>S&P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장 기</td> <td>투자 적격</td> <td>Aaa ~ Baa3 (10등급)</td> <td>AAA ~ BBB- (10등급)</td> </tr> <tr> <td>투자 부적격</td> <td>Ba1 ~ C (9등급)</td> <td>BB+ ~ D (12등급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단 기</td> <td>투자 적격</td> <td>P-1 ~ P-3 (3등급)</td> <td>A-1 ~ A-3 (3등급)</td> </tr> <tr> <td>투자 부적격</td> <td>NP</td> <td>B ~ D (3등급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구 분 | | Moody's | S&P | 장 기 | 투자 적격 | Aaa ~ Baa3 (10등급) | AAA ~ BBB- (10등급) | 투자 부적격 | Ba1 ~ C (9등급) | BB+ ~ D (12등급) | 단 기 | 투자 적격 | P-1 ~ P-3 (3등급) | A-1 ~ A-3 (3등급) | 투자 부적격 | NP | B ~ D (3등급) |
| 구 분 | | Moody's | S&P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장 기 | 투자 적격 | Aaa ~ Baa3 (10등급) | AAA ~ BBB- (10등급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투자 부적격 | Ba1 ~ C (9등급) | BB+ ~ D (12등급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단 기 | 투자 적격 | P-1 ~ P-3 (3등급) | A-1 ~ A-3 (3등급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투자 부적격 | NP | B ~ D (3등급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보험미수금 | 대차대조표일 이전의 보험거래로 인하여 회수하여야 할 보험료 및 보험금으로 재보험거래를 포함합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지급준비금 | 대차대조표일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소송에 계류 중에 있는 금액과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 등으로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| 대차대조표일 현재 회수된 보험료 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미경과보험료 해당액으로 회수기일 미도래분에 대한 선수보험료를 포함합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비상위험준비금 | 비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합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경과보험료 | 수입보험료에서 지급보험료를 차감하여 전기이월미경과보험료를 가산하고 차기이월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원수보험료 | 원수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보험료를 의미합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수재보험료 |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보험료를 의미합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해약환급금 | 일반보험계약(장기저축성 보험계약 제외)의 해지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해지보험료를 말합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출재보험료 |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재사에 지급한 보험료를 말합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해약환급금환입 | 원보험계약의 해지로 계약자에게 지급한 해약환급금 중 재보험자로부터 환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발생손해액 | 지급보험금에서 수입보험금을 차감하여 차기이월지급준비금을 가산하고 전기이월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출재보험수수료 | 재보험특약에 의한 출재보험료 중 수재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